

심판 자격 규정 및 세미나

2009년 3월 11일 제 정
2010년 1월 12일 개 정
2011년 1월 11일 개 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내 요트경기의 심판에 대한 자질향상 및 경기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심판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공식대회에서 요구되는 심판인력의 수급은 물론 심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구분 및 활동범위) 심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심판 : 국제심판, 국가심판

엄파이어 : 국제엄파이어, 국가엄파이어

<개정 110111>

제3조(응시자격 및 자격취득) ① 심판(엄파이어) 응시자는 본 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KSAF 심판위원회가 승인하고 KSAF 또는 가입된 단체(시도협회, 클래스협회, 클럽 등)가 주최한 강습회를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되면 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.

응시자격은 아래항에 하나이상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다.

* 3급 이상 세일링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

*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

* 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

*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경기경력 6년 이상인 자

* 국가대표선수 및 상비군(후보)선수 경력이 있는 자

*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자

*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

* 대학에서 세일링을 전공하는 학생

* 학교체육교사 및 교수로서 경기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

② 국제심판(엄파이어)은 심판 중 ISAF 국제심판 자격 SYSTEM1, 2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KSAF 심판위원회의 심사/추천을 받아 ISAF에 신청 취득한다.

③ ISAF 및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세미나참가